



가정통신문

2024학년도 교육비(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)
지원 신청 안내

더불어 살아가며
꿈과 지혜를 키우는
한밤골 교육

군산지곡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신지길 26. 교무실 ☎ 461 - 3686 FAX ☎ 910 - 7110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교육비(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)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우선지원대상자, 학교장, 다자녀, 다문화 추천 자격에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서는 지원 기준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**5월 31일(금) 16:00**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교육비-방과후 자유수강권 추천은 매년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)

1. 신청 기간 : 2024. 5. 24.(금) ~ 5. 31.(금)
2. 신청 방법 : **담임교사와 먼저 상담 후**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**밀봉**하여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
3. 지원 내용 : 연간 60만원 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함.
4. 지원 기간 : 2024년 6월 ~2025년 5월
5.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: 뒷면 기재
6. 교육비 지원 선정 인원
 - 가. 학교장 추천 - 주민센터(복지로 등)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선정된 교육비 지원 대상자(5.31.자 기준) 중 1,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5%까지 추천 가능
 - 나. 다문화 - 1,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%까지 추천 가능
 - 다. 다자녀 - 1,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%까지 추천 가능
7. 선정 결과 안내: 2024년 6월 5일 이후 **학교에서 개별문자 발송 예정**
8. 유의 사항
 - 가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2023년 1월~ 2023년 12월 기준-동거가족(부모 각각 제출)
 - 나. 학교장추천 및 다자녀·다문화 가정 지원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 - 다.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음.
 - 라. 방과후학교 미수강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.
 - 마.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.
 - 바. 미선정된 경우에도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.
 - 사. 기존에 주민센터(복지로 등)에 신청한 교육비 지원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 되었음.
8. 문의 : 교무실 063-461-3686

2024년 5월 24일

군산지곡초등학교장

※교육비(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) 지원 대상 및 제출서류※

구분	지원 대상	제출서류
우선 지원 대상자	-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*난민 교육비지원추천 신청서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	1. 서식3 -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2. 추천서(법무부 발급) 3. 가족관계증명서 4.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 여부 확인 -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
	-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자녀 *국가보훈대상자 구분: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	1. 서식3 -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2. 보훈자격확인서(보훈처 발급) *국가유공자자녀라는 확인증명서 3. 가족관계증명서
학교장 추천	* 담임 교사와 상담 필수 -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·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학생 -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(가구원 전원 외국인, 재외국민 가족,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) - 가계 소득·재산 증빙이 어려우나,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-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(현재실직인경우)자녀 - 부모형제자매를 간병하는 학생, 육아기 근로단축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	1. 서식 1 2. 주민등록등본 -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내의 것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동거가족 전체의 것(부·모 모두제출) * 실직확인서-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* 신청서에 안내된 증빙서류 추가 제출
다문화 추천	-서로 다른 국적, 인종,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	1. 서식 2 2. 가족관계증명서 -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내의 것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동거가족 전체의 것(부·모 모두제출) 4. 주민등록등본('국적취득에 의한 신규 등록' 확인)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
다자녀 추천	-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부터 적용 (셋 이상 첫째 포함)	1. 서식 2 2. 가족관계증명서 -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내의 것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동거가족 전체의 것(부·모 모두제출)

